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강승규 · 박덕흠 · 임이자
신동욱 · 서일준 · 김희정
고동진 · 김미애 · 김기웅
박수영 · 김재섭 · 최수진
박충권 · 박대출 · 강선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·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,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

5항)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본문 중 “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”를 “「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가축 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 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	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「 <u>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3조에 따라 같 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<u>축 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가축사 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